

## 제10차 람사르 당사국총회 결과 및 평가 '08.10.28~11.4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한민국 창원에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을 주제로 내건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0)가 열렸다. 158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람사르국제파트너기구(IOP), 국제기구, 국제/지역 시민단체에서 온 2000명의 참가자가 총회에 참석하였다.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는 습지와 기후변화, 습지와 바이오연료, 습지와 자원채취산업, 습지와 빈곤퇴치, 습지와 인간건강,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생물다양성, 물새이동경로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등 총 32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람사르협약 2009-2013 예산안과 2009-2014 전략계획도 채택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COP10의 성과에 만족하였다. 람사르총회가 한국과 아시아에서 대중들로부터 받은 관심이 협약의 위상을 제고한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지만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러 결의문을 통해 협약이행을 위한 보고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과 협약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람사르사무국의 법적지위 관련사항이 총회 이후의 작업반으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또한 많은 참가자들이 습지와 기후변화, 습지와 바이오연료 문제에 있어 협약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하였으나, 국제적 차원으로 협약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도 있었다.

### 람사르협약의 역사

람사르협약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된 국제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은 습지와 그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사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국제적 협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협약의 목적과 범위

본래 이 협약은 주로 물새 서식지로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강조했으나, 점차 물새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인간복지에 있어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약의 범주를 넓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다루게 되었다. 지구 대지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습지는 용수 공급, 어업, 농업, 임업, 관광산업의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람사르협약에는 15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1,800개 이상의 습지가 람사르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억6천1백3십만 헥타르에 달한다. 협약 당사국은 람사르 습지등록기준에 부합한 자국 영역 내의 습지를 1곳 이상 지정, 람사르

습지의 생태적 특성 유지, 자국 내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습지를 자연 보호지구로 설정, 습지의 연구 및 관리분야 인력양성의 의무가 있다. 또한 접경습지, 공유된 수계, 공유된 동식물 종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협약이행 당사국간의 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당사국은 3년마다 회의를 열어 협약의 이행과 습지보전 현황을 보고, 과학기술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추후 3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본 협약의 업무는 람사르상임위원회, 과학기술검토포널(STRP),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람사르사무국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 역대 당사국총회

본 협약의 발효 이래로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 COP1: 이탈리아 칼리아리 (1980.11)
- COP2: 네덜란드 호로닝언 (1984.5)
- COP3: 캐나다 레지나 (1987.5~6)
- COP4: 스위스 몽트뢰 (1990.6~7)
- COP5: 일본 쿠시로 (1993.6)
- COP6: 호주 브리즈번 (1996.3)
- COP7: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9.5)
- COP8: 스페인 발렌시아 (2002.11)
- COP9: 우간다 캄팔라 (2005. 11)

### 목차

람사르협약의 역사.....	1
제10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	2
COP10 개회.....	2
특별발표.....	3
지역회의.....	3
결의문.....	3
COP10 폐회.....	13
제10차 당사국총회 평가.....	13
관련 회의소식.....	15
용어 모음.....	16

**COP7:** 인간 사회와 습지 서식처간의 상호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지역별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30개의 결의문 및 정책, 업무계획, 예산에 대한 4개의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람사르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COP8:** 당사국의 문화 및 생태계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습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습지와 농업, 기후변화, 문화, 맹그로브, 수자원 배분 및 관리, 세계담원위원회 보고서를 포함하는 정책, 기술,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40여 개 이상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대표단은 2003-2005예산 및 업무계획안과 2003-2008전략계획안을 승인하였다.

**COP9:**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총회로 정책, 업무계획, 예산안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25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람사르의 '현명한 이용'개념 이행을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추가 지침, 현재 진행중인 수자원관련 다자간협약과의 연계방안, 자연재해의 예방, 감소 및 완화를 위한 협약의 역할, 습지와 빈곤자감, 습지의 문화적 가치, 조류인플루엔자의 출현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2006-2008예산 및 업무계획안을 채택하였고, 2003-2008전략계획안을 검토했다. 또한 비공식 장관회의에서는 캄팔라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습지생태계의 손실과 파괴를 막기 위한 람사르협약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제10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

2008년 10월 28일(화) 저녁에 제10차 당사국총회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COP9 의장을 맡았던 우간다 환경부장관 Maria Mutagamba는 COP10 의장을 맡게 될 한국의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람사르 기(旗)를 전달하였다. 이 장관은 인류복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 습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인간건강과 같은 세계적 이슈에 공헌하게 될 논의를 독려했다.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는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적 조치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사국들이 습지 훼손을 막기 위해 힘을 쓸 것을 촉구하였다.

Anada Tièga 람사르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생태계 사업에 지출되는 재정에 관한 자료를 비롯한 수자원관리, 식량과 에너지안보, 기후변화에 있어서 습지가 갖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장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제시하면서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역할모델로서 자리매김 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리틀엔젤스 합창단과 역대 COP 개최국의 어린이들은 습지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하였고, 아울러 현 인류와 환경의 연결고리인 습지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다른 어떤 생태계 보다 습지가 더욱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린 새천년 생태계 평가(2005) 내용을 상기시켰다.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습지 보전이야말로 한국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임을 표명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람사르협약은 향후 미래를

지속적으로 그려나갈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환경과 인류복지의 조화가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ulia Martin-Lefèvre 세계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은 최근의 IUCN 총회에서 전달한 바 있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이 사회복지 및 경제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하면서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대해 기후 변화와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David Coate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Ahmed Dioghlafor를 대신하여 물, 습지,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지지하였고, CBD COP9에서 CBD-람사르 공동활동 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강조했다.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람사르협약의 발전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과 민간 분야의 역할을 칭찬하였고, 환경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지구적 그린 딜(Green Deal)에 대한 UNEP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기후 변화를 언급하면서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Paul Mafabi 람사르 상임위원장은 2008년 람사르상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과학분야에서는 영국왕립 조류보호협회의 David Pritchard, 관리분야에서는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WWF)의 Denis Landenbergue, 교육분야에서는 태국 마히들대학의 Sansanee Choowaew, 특별상은 체코 사우스 보헤미아 대학의 Jan Květ이 2008년 람사르상을 받았다.

수자원관리, 탄소고정총량과 생태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다중-예비양 자연보호기금 서명행사를 마지막으로 개최식이 막을 내렸다.

본 보고서는 본회의와 특별회의, 지역회의, COP10 결의문 내용을 포함하며, COP10 결의문은 의제 순서 별로 정리되어 있다.

## COP10 개최

10월 29일 수요일 오전에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COP9 개최국 우간다의 환경부 장관 Maria Mutagamba 의장은 Anada Tièga 람사르 사무총장에게 우간다 환경부의 람사르습지관리 가이드북을 전달하였다.

## 회의진행 관련내용

의장과 부의장 외에 교체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비롯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이번 총회의 공식의제(COP10 Doc.1 수정안2) 및 의사진행절차(COP10 Doc.2 수정안1)가 채택되었다. 이만의 한국 환경부 장관이 COP10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한국의 환경부장관인 이만의 의장은 람사르협약을 체결한 158개국들과 1,800개 이상의 람사르습지가 람사르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 의장은 COP10 의 새로운 전략 계획 완성 및 채택이 람사르협약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으며, 아울러 동 협약이 향후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결정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습지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임을 주지하였다. 그 외 김찬우 교체의장, Rejoyce Mabudafhasi(남아프리카 공화국) 부의장, Patrick Van Klaveren(모나코)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총회의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대표는 아프리카의 Manichand Puttoo(모리셔스), 아시아의 Nirawan Pipitsombat(태국), 신 열대지구의 Nancy Cespedes(칠레), 북미의

Monika Herzig(멕시코), 오세아니아의 Deborah Callister(호주)이며 호주가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David Pritchard가 동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총회의 핵심 예산안 합의를 위해 Herb Raffaele(미국)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무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이어 총회에 등록된 옵저버가 승인되었다(COP10 Doc.39).

### 보고내용

Paul Mafabi 상임위원장은 2006-2008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였다(COP10 Doc.4). 상임위보고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업무와 예산 상황, 과학기술검토포널(STRP), 의사소통-교육-참여-인식증진(CEPA) 감독패널의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람사르소유모지지원기금(SGF)을 받을 프로젝트, COP10 결의문 초안과 창원선언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Heather Mackay STRP 의장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람사르협약의 이행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영역 및 향후 미래에 가능한 선택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과 도전 과제들을 강조하였다. STRP 의장은 물, 습지, 생물다양성과 기후 변화가 개별적인 이슈라기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COP10에 앞서 열린 세계습지 NGO대회 참가자들의 대표로 박인자씨는 습지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및 최적이행방안 전수를 촉진-고무하기 위한 세계습지 네트워크 구성을 표명하는 순천 NGO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협약 당사국에게 모든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습지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촉구했고 당사국, 파트너국제기구, NGO, 지역토착민 사이의 협력증진을 요청했다.

Anada Tiéga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지구적 차원의 협약 이행 개요를 제시했다.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자원채취산업, 인간건강, 도시화와 수자원공급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습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무총장의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당사국들은 각 국가의 람사르협약 이행상황 및 람사르습지 지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몇몇 당사국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이오연료, 우선순위 설정 및 사무국의 인력 및 역량강화, 사무국의 법적지위, 기후변화와 습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려와 관심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채택된 사무총장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논의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iisd.ca/vol17/enb1727e.html>

### 특별발표

총회기간 동안 협약의 이행과 새롭게 등장한 이슈와 관련된 특별연설들이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 29일(수)에는 한국 환경부 김지태 국장이 ‘한국의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특별연설을 하였다. 그는 11개의 람사르습지를 포함하여 한국 지표면의 7.7%가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한국의 COP10 후속조치 우선순위 10가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10월 30일(목)에는 탄자니아의 환경부장관 Batilda Burian이 북부

탄자니아의 나트론호수(Lake Natron)의 습지에 서식하는 플라밍고에 대한 영상물 ‘The Crimson Wing’을 보여주었고, 람사르협약과 디즈니-네이처 간의 협력을 통한 나트론호수신락기금의 설립을 보고하였다. 10월 31일(금)에는 STRP부위원장 Rebecca D’Cruz가 다른 여러 의제들 중에서 인간건강과 습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습지관리자들에게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부문에 활발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11월 3일(월)에는 STRP소속 전문가 Max Finlayson이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습지 결의문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수자원 및 토지이용과 연계되어있음을 설명하였고, 습지복원의 가치와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http://www.iisd.ca/vol17/enb1727e.html>;

<http://www.iisd.ca/vol17/enb1728e.html>;

<http://www.iisd.ca/vol17/enb1729e.html>;

<http://www.iisd.ca/vol17/enb1731e.html>.

### 지역회의

결의문 초안에 대한 입장을 조정과 새로운 상임위원단이 선출을 위한 지역회의가 10월 30일(목)~11월 1일(토) 3일간 진행되었다. 모든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지역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지역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습지 및 바이오연료 문제가 논의되었고, 아메리카 지역회의에서는 사무국의 법적지위와 지역이니셔티브가, 유럽 지역회의에서는 습지와 바이오연료, 기후변화,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세아니아지역회의에서는 총회개최빈도와 지역이니셔티브 지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결의문

**[COP10 DR1] 전략계획 2009-2014:** 람사르 전략계획 (COP10 Doc.8 and DR1)은 30일(목)에 본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본 전략계획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식량에 대한 전지구적인 수요 증대를 주시하며 태국은 국가별 습지 정책과 기구들이 농업분야와 함께 공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뉴질랜드는 전략 계획의 일부 목표의 경우 주어진 시기 내에 성취되기 어려운 잠재적 난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칠레는 동 계획안이 모든 생산분야를 포함할 필요를 강조하며 COP 개최주기를 4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드러냈다.

인도, 케냐, 탄자니아는 습지 보전의 감시와 평가,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과학에 기반한 습지 개발 지침서 및 수자원 위험관리에 적용될 수량화된 기준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스위스는 전략적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검토가 COP11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수단은 CEPA 이행을 위한 국가 focal point(NFP)의 설립을 환영하였고, 과테말라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역 토착 공동체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현재의 재원 내에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태국은 자연재해가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맹그로브의 해안보호 역할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U와 호주가 제안한



편집상의 수정사항을 다른 당사국들도 받아들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전문, 권고문, 부속서로 이루어진 최종결의문(COP10 DR1 수정안2)은 전략계획의 목적, 국가차원의 협약이행, 2002-2008협약이행상황, 향후 주요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결의문은 당사국들이 지속적으로 전략계획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지역의 상임대표들과 의사교환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전략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COP11에 제출할 중간보고서를 사무국과 함께 평가, 수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COP10 DR2] 재정 및 예산:** 10월 30일(목)에 본 결의문(COP10 DR2 수정안1)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고 나서, Raffaele(미국)이 의장인 컨택그룹을 통해 총회 기간 동안 예산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결의문 초안 부속서에는 명목예산동결안, 실질예산동결안 4%증액안, 11.75%증액안으로 총 4개의 선택안이 제시되었고, 11.75%증액안에는 사무국의 협력과 자금조달 관련 인력충원, 지역이니셔티브 역량강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국들은 람사르협약 당사국 및 등록습지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사무국의 인력으로는 협약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많은 당사국들이 사무국의 지역기술담당인력 증원과 지역이니셔티브의 확대를 위한 4%증액안을 지지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반대여론을 표명하였다. 컨택그룹에서는 제안된 예산안과 새로이 제안된 협력증진담당 직책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Raffaele 의장은 수정안(COP10 DR2 수정안2)이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협력증진담당 직책 신설을 포함한 4%증액안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지역의 나라들은 기부금을 100% 증가시킨 2000 CHF(스위스프랑) 납부의사를 밝혔고, 다른 나라들에게 각 상황에 맞추어 기부금을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많은 당사국들은 예산으로 인해 지역이니셔티브와 STRP의 업무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명목예산동결안을 지지함을 밝히고, 중국은 증대된 예산액의 분배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둘 다 협의된 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Raffaele은 아프리카의 기부금 증대는 아프리카 지역이니셔티브를 위해 쓰일 것이며, 지역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핵심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혔다.

**최종결의문:** 4% 예산증액안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협력증진인력 충원을 지지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COP10 DR2 수정안2). 또한 본 결의문은 사무총장에게 새로운 직책의 임무수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보전기금(Reserve Fund)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열리는 서-중아시아의 람사르협약 가입 40주년 행사에 대한 당사국들에게 자발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부속서에는 핵심예산 세부내용이 기입되어 있고, 협력증진담당직책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설명과 각 당사국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명시되어 있다.

**[COP10 DR3] 당사국총회와 지역회의 시기 및 빈도:** 당사국 총회의

개최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본 결의문은 10월 31일(금)에 논의되었다. 또한 본 결의문은 상임위, STRP, CEPA 회의의 지역별 순회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총회 개최주기연장에 반대하였다. 스위스는 총회개최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이행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고, 지역별 의사결정에 반대하였다. 뉴질랜드도 의사결정의 위임에 반대하였고, 바베이도스는 북미를 대표하여 총회 기간연장 시 두 차례의 지역회의가 필요하며, 신흥 이슈에 대한 총회의 대응능력을 저하를 지적하였다. 오세아니아를 대변하는 사모아, 그리고 중국은 COP의 4년 주기가 추가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본 협약의 국제적 가치성을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로 인하여 람사르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재정지출 증대를 우려하여 회의 지역순회방안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미국은 회의 지역순회는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며 그 장점을 언급하였다. 총회 개최주기 연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받아들여 사무국은 당사국들이 원한다면 COP11에서 본 내용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밝혔다. 사무국은 본 결의문이 부결되었음을 회의록에 표기하고, 당사국들에게 재정이 허락하는 한 상임위 지역순회방안에 대한 고려를 요청, 대표단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COP10 DR4] 관리작업반 인수위원회 설립:** 본 결의문(COP10 DR4)은 에콰도르가 주장한 각 IOP당 대표 1명씩만 인수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반영하여 11월 1일(토)에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총회는 본 결의문(COP10 DR4) 결의문IX.24에 제시된 작업반 설립시기를 수정하여 영구적인 관리작업반 설립을 재확인했다. 총회에서 받아들인 결의문IX.24에 따르면 본 관리작업반은 상임위, 재정소그룹, STRP, 지역회의의 역할과 이들이 임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매 총회에 보고하고, 새로운 관리구조 및 당사국과 IOP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또한 결의문IX.24는 관리작업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매 상임위와 총회 때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COP10 DR5] 람사르사무국의 국제업무 원활화:** IUCN 산하의 현행 람사르체제의 법적지위에 대한 사항은 10월 30일(목)에 다루어졌다. Luis Vayas(에콰도르)와 Tony Slatyer(호주)를 공동의장으로 한 법적지위 컨택그룹은 10월 30일(목)부터 11월 3일(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최종결의문은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사무국의 위탁연구를 기반으로 Anada Tiéga 사무총장은 선택사안별 향후 사무국의 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COP10 Doc.20, Add.1 and Doc.35 and COP10 DR5). 이에 따르면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요약되는데 1)IUCN산하의 현행 지위 유지, 2)독립적 기구로의 전환, 3)유엔 체제 편입이다.

본회의와 컨택그룹에서 대표단들은 세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협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들 사이에서 유엔체제가 협약의 중요성 증진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엔체제로의 편입을 지지하였다. 반면, 일부

기여국들은 유엔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비용 증대는 람사르협약의 예산을 25%증대 시킴을 경고하고, 비용과 편익을 잘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였다.

컨택그룹에서는 법 전문가의 유엔체제로 전환에 대한 설명과 사무국의 현황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이 이루어졌다. 여러 의견교환이 있는 후, 행정개편 특별작업반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 작업반의 목적, 임무, 및 회의일정 등에 대해 논의된 세부사항이 결의문 수정안에 반영되었다. 수정된 결의문은 변경사항 없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5 수정안1)은 결의문IX.20에서 요구사항을 COP11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본 결의문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 람사르사무국 직원이 UNEP회의 및 UNEP산하 다자간환경협약 회의에 국제협약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UNEP사무총장에게 요청
- 사무국의 국제활동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원 요청
- 사무국운영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검토 및 조인, UNEP산하로 편입하는 사안을 결정짓는 역할을 맡는 특별작업반 설치
- 상임위에게 사무국이 총회의 승인 없이 특별작업반에서 내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COP11에 권고사항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

본 특별작업반의 목적, 임무, 업무계획, 시간계획, 구성 및 재정에 대한 규정사항은 부속서로 첨부되었고, 첫 회의는 COP10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개최, 회의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 12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COP10 DR6]지역이니셔티브 전략계획 2009-2012:** 재정소위원회 위원장 Raffaele은 지역 이니셔티브가 협약의 지역적 확대와 효과적인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결의문 초안(COP10 DR6)을 10월 31일(금)에 소개했다. 수정된 결의문은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협약 당사자들과 지역 내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합의와 수정안을 제안하는 토론이 각 언어로 진행되었다. 탄자니아와 카메룬은 계획된 사업의 자금확보에 대해 핵심예산 외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예산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와 스위스는 표준화된 보고서 형식을 제안, 사모이와 호주는 균형적인 지역 이니셔티브 배분을 요청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일부 남아프리카 당사국들은 향후 3년 동안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헝가리 주재로 COP10 CR6에 대한 비공식회의를 가진 후, 대표단은 COP회의들을 통해 새로이 선출된 이니셔티브가 운영 방침과 제대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 승인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동의했다. 전문협력기구 또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개최국이나 정부간 기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무국의 정기적인 평가 및 감시절차도 승인되었다.

**최종결의문:** 채택된 결의문(COP10 DR6 수정안2)은 지역이니셔티브 운영방안 부속서를 채택하고, 총회 사이 기간에 상임위에 승인된 운영방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안된

지역이니셔티브를 검토 및 승인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

부속서로 첨부된 습지에 관한 협약의 2009-2012지역이니셔티브 운영지침은 지역이니셔티브의 목적, 사무국과의 연계, 조직/체제, 필수요건, 재정 및 기타지원, 보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COP10 DR7] 람사르 소규모자원기금(SGF) 활성화 2009-2012:** 본 결의문은 10월 31일(금)에 본회의에서 처음 검토되고,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대표단들은 선진국들의 자발적 SGF 기금조성의 의무,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승인된 SGF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조하였다. 한국은 SGF를 위해 미화 십만 불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울러 람사르 탄소상쇄기금 기부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습지관리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브라질은 지역별 SGF기금모음을 촉진하는 Signature 이니셔티브 설립 시 총회 승인절차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지구환경기금과 같이 SGF 기금마련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국제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참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제안사항을 반영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COP10 DR7 수정안1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기금조성을 강조하고 SGF 재정을 연간 백만 CHF(스위스프랑)씩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군소도서개도국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었다. 결의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 SGF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를 Small Project Portfolio(SPP)로 설정하고, 웹사이트에 프로젝트 내용을 게시하도록 요청
- SGF에 자발적인 기금을 기부하지 못했던 기탁자들에게 SPP를 지원하도록 장려
- Signature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인 지원체제 구축 촉구

**[COP10 DR8] 의사소통, 교육, 참여, 인식증진 (CEPA) 프로그램 2009-2014:** CEPA 2009-2014에 관한 협약 프로그램 결의문은 10월 31일(금)에 본회의에서 처음 검토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이전의 CEPA 활동에 대한 언급을 제안했다. 정책수단 및 프로그램에 CEPA 행동계획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우간다는 빈곤퇴치에 대한 추가적 언급을 제안했다. 월요일 총회에서 COP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결의문 수정안을 검토 및 채택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8 수정안1)에서 COP은 제3차 CEPA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전략계획과 함께 6년 동안 당사국, 사무국, IOP, 기타 NGO, 지역사회 기반기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국제, 지역, 국가, 지방 차원에서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결의문에서는 아직 정부 및 NGO의 CEPA NFP를 지정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CEPA NFP 지정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들에게 국내 습지 CEPA 행동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도록 요청하고, 세계 습지의 날을 활용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관심 고양, 기존의 또는 제안된 습지 교육 센터 및 관계 시설의 개발 지원을 촉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무국의 생물다양성 교섭단체, CBD 비공식 자문위와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부록1의 용어, 부록2의 CEPA NFP의 책임 및 역할, 부록3의 CEPA 프로그램 주체와 이행, 부록4의 CEPA 프로그램 목표 그룹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COP10 DR9] STRP 운용방식 개선** 10월 31일(금)에 STRP 의장 Heather MacKay는 대표단들에게 STRP 운용방식 개선안을 보고했으며, 11월 4일(화)에 수정된 결의문에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정안은 사회경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과, STRP 작업계획에 최근 이슈를 추가할 때 결정과정에 당사국이 직접 관여하도록 하지는 브라질의 제안을 반영했다. 호주는 남극조약의 STRP 읍저버 목록 포함에 대한 자국의 유보 입장을 COP10 보고서에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결의문:** 채택된 결의문(COP10 DR9 수정안1)에서 COP은, 기존 STRP 운용방식을 부속서와 같이 개선하여 2009~2012년 동안 적용하고, COP의 추가 수정이 없을 경우 그 이후의 기간까지 적용할 것을 확정; STRP 우선 부문에 대해 STRP 감독위가 주제별 전문가를 지정할 것에 동의; 기타 부문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다른 국제협약 및 기관의 과학기후와 협력 등)을 통해 STRP가 전문가를 추가 확보할 것에 동의; 남극조약 사무국을 포함하도록 STRP 읍저버 목록을 수정; STRP NFP가 위임사항에 명시된 자질을 갖추도록 당사국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부속서에는 STRP 운용방식의 주요 목표와 STRP 감독위의 수립과 책임을 명시한 STRP 운용방식을 포함한다.

첨부된 NFP 위임사항에는 STRP NFP의 전문성, 기술, 능력 프로필을 포함해 STRP NFP의 지정, 기능, 책임, 의무 등이 명시되었다.

**[COP10 DR10]협약의 과학기술부문 향후 이행계획** 본 결의문은 10월 31일(금) 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11월 4일(화) 총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논의의 주 관심사안은 STRP 작업의 최우선 업무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대표단들은, 습지 생태 특성, 습지 및 도시화, 빈곤 저감, 습지 및 관광 관련 지침을 우선업무로 지목했다. EU는 자발적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사국, 기부자, 정부간 기구, 국제파트너기구의 지원을 촉구했다. 브라질은 습지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바이오 연료와 습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10 수정안1)에서 COP은, 부속서1의 2009-2012 STRP 우선활동과 부속서2의 업무 목록을 STRP 작업의 근거로서 승인; 당사국, 기부자, 정부간 기구, IOP, 국가 NGO 등에게 프로그램(부속서1의 STRP 우선행동 프로그램 등)을 랍사르협약 이행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하도록 요청; 당사국들에게 STRP 작업 프로그램, 특히 우선업무 지원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요청한다.

부속서1에는 2009~2012 STRP 작업의 우선업무와 이행 예상 비용이 포함돼 있고, 28개의 업무에 총 비용은 635,000 CHF(스위스프랑)이 예상된다.

부속서2에는 STRP 업무의 전체 목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현재 STRP의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다.

- 습지의 현명한 이용
- 습지 목록, 평가, 모니터, 보고
- 습지와 인간 건강

- 습지와 기후변화
- 습지와 수자원 관리
- 랍사르습지
- 습지 관리(복원, 저감, 보충)

**[COP10 DR11] 타 다자간환경협약(MEA)과의 파트너십 및 시너지** COP10 DR11 결의문은 11월 1일(토) 총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첫 논의 중에, EU와 호주는 보고서의 요청사항 간의 조화의 개선점에 대한 언급을 제안했다.

토요일에 진행된 수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호주는 매 보고 회기마다 적어도 1번은 협약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수정 요청을 포함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최종 결의문(COP10 DR11 수정안1)은 특히 다음을 언급한다. 관련 협약과의 협력 및 생물다양성 교섭단체에의 지속적 참여; CBD와의 지속적 협력; 제4차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에 관한 협약, 아프리카-유라시아 물새 협정의 효율화; 정부간 지역 단체들과 긴밀한 작업관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수립 및 강화; GEF 등 재정 기구, EU집행위 및 관계 부서 등의 자금 제공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결의문은 또한, IOP 대표들에게 협약의 인식 증진 지원을 권장; 201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요청; 사무국과 STRP가 CBD, UNEP, UNEP-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내륙 습지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발할 것을 요청; 매 보고 회기 중 최소 1번은 협약의 효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협약 활동 결과에서의 생태 지표 개발에 대한 결의문VIII26 이행을 위한 STRP 작업의 지원을 사무국에 촉구; 사무국과 기타 협약 간의 협력에 보고 수요 조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OP10 DR12] 비즈니스 부문의 파트너십** 본 결의문은 10월 31일(금)과 11월 1일(토)에 논의되었으며, 11월 4일(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논의 중에, EU를 대표한 독일이, CBD COP9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추가 언급할 것을 요청했다. 탄자니아는, 사무국의 기술지원을 받는 3자 파트너십과 접근 및 이익공유 조치의 포함을 요청했다. 대표단들은 또한, 당사국과의 적절한 협의, 수자원 유지 및 관리에서 민간부문의 책임 공유, 관광개발과 연안습지의 관계를 확실히 할 것을 강조했다.

수정안과 관련해 독일은, 관련 민간기업을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결의문이 지나치게 비즈니스 업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문에서 공급자계약에 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질은, 비즈니스 부문이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을 선정하여 물부족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줄이지는 문단에 STRP 평가 배경의 추가를 제안했다. 결의문은 수정 후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은 CBD COP9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수자원 관리와 지속불가능한 환경관리의 위험 경감에 대한 비즈니스 부문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한, 비즈니스 부문이 사업 행동과 습지 생태계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습지 보전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와 생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격려; 정책 결정자들, 특히

비즈니스 리더들이, ‘비즈니스와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 이니셔티브’를 참고하여, 습지를 포함한 생태계 관리를 위한 정책, 전략, 운영 방식을 개발·채택하여, 습지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및 상쇄할 수 있도록 권장; 과학연구 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위한 랍사르 및 파트너들과 비즈니스 부문의 공동 노력 지원; 민간과 공공 기업들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 개발을 통해 공동 이해, 경제적 인센티브(습지 및 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등)를 이행하도록 권고; 기업의 환경 및 사회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의 물 발자국을 측정하는 지침(물 발자국 네트워크의 지침 등)을 제공할 것을 STRP에 요청한다.

결의문의 부속서에는 랍사르협약과 비즈니스 부문 간의 파트너십 원칙에 대한 개요가 있다.

**[COP10 DR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랍사르 습지 목록 현황:** 본 사안은 11월 3일(월)에 처음 논의되어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중국과 코스타리카는, 랍사르습지정보양식(RIS) 및 업데이트 양식을 시급히 제출해야 하는 나라 목록인 부속서1에서 자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많은 국가들이 접경습지 목록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으며, 일부 국가는 보고서에 양국 분쟁에 관한 언급을 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요일에 대표단들은 수정된 결의문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구에 대해, 한국은 한국 NGO들과의 협의를 거쳐, 습지 보호 및 생태계 보전지역의 생태적 특성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사무국에 보고한다는 문구의 추가를 요청했다. 이것과 다른 수정 요청들을 반영해 결의문은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13 수정안3)은 당사국들이 COP9 이후 약 250개의 새로운 랍사르습지를 지정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보고서가 제출된 특정 습지들에 대해 생태적 특성 복원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습지복원 상(賞)’을 제정해 당사국들이 모범사례를 본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결의문에서는 특히 사무국에게, 몬트뢰목록 질문지를 수정하는 STRP 업무와 연계해서, 당사국의 진행보고 주기를 고려하여 매회 COP 이전에 목록을 갱신할 것과, 특정 습지에 대한 생태적 특성 정보를 요청한다. 또한, 새로운 습지 지정 및 기존 습지 확장과 갱신 시 최신 랍사르습지정보양식(RIS) 사용을 권장; 지정된 습지에 대한 공식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해 간접히 랍사르습지정보양식(RIS) 및 지도 제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속서에는 우선적으로 1개 이상의 랍사르습지정보양식(RIS) 제출이 필요한 당사국목록과 COP10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간이 유발한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예정인 랍사르습지 목록이 포함돼 있다.

**[COP10 DR14] 랍사르 데이터 및 정보 수요에 관한 프레임워크**  
**[COP10 DR15] 습지 생태특성과 핵심목록 구축의 통합 과학기술 지침, [COP10 DR16] 습지생태특성 변화의 추적, 보고 및 조치의 과학기술 지침:** 11월 1일(토)에 대표단들은 다음의 3개 결의문을 검토했다. 보고 갱신 및 효율화: 자료 정보 수요를 위한 체계(COP10 DR14); 습지의 생태특성 기술과, 핵심 목록 양식 및 자료 수요; 과학 및 기술 지침의 조화(COP10 DR15); 습지 생태 특성 변화의

감지/보고/대응 과정의 체계(COP10 DR16). 11월 3일(월) 총회에서 수정된 결의문들이 채택되었다.

많은 당사국들이 CBD와 의제21 보고양식과의 조화를 요청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국가 능력과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연속성의 한계를 고려해 양식의 단순화를 요청했다. 일본은 보고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IOP들은 관리효과평가도구에 대한 언급을 제안. 지속적 국제물새통계를 위한 당사국들의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14 수정안1)은 랍사르협약의 자료 및 정보 수요를 위한 체계를 제시한다. COP10 DR15 수정안1은 주요 목록, 생태특성 기술, 랍사르습지 지정 및 협약3.2조의 보고(습지생태특성 변화 보고)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체계 체계를 제시한다. COP10 DR16 수정안1에 제안된 체계는, 습지 구역 손실의 저감과 보상 및 습지 이슈에 대한 STRP의 지침 개발에 대한 상세 권고사항을 제시; 손실/황폐화된 습지 복원에 대한 기존 랍사르 지침의 갱신 및 확장을 위한 제안 준비를 언급한다.

**[COP10 DR17]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과학 및 기술 지침 갱신:** 11월 1일(토)에 다음의 두 가지 수정 요청을 반영해 COP10 DR17을 채택했다. 아프리카의 능력배양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과 터키의 지속가능개발체계에 지침을 포함하도록 당사국에 ‘촉구가 아닌 ‘권장’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수정사항으로 반영되었다.

-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에서 COP은:
-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부속서의 지침들을 환영
  - 당사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존의 지역이니셔티브와 기여 체계 내에서 지침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
  - 당사국들이 이 지침들을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
  - 랍사르사무국이 현명한 이용 핸드북 랍사르 툴킷 수정 및 갱신과 함께 지침을 보급할 것을 지시

부속서에는 CBD 결정문 VI/7(식별, 모니터, 지표, 측정, 2006)으로 채택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CBD의 자발적 지침이, 랍사르 STRP의 습지 및 랍사르협약 관련 요소에 대한 주석과 함께 첨부되어 있다.

**[COP10 DR18] 새천년생태계평가 결과:** COP10 DR18은 11월 1일(토) 총회에서 소개되었다. 국제 생물다양성 진행과정 및 평가에 대한 추가적 언급을 포함해 수정된 결의문은 11월 3일(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COP10 DR18 수정안1에서 COP은: CBD COP (MA 후속)의 결정문 IX/15가 국가 이하 수준에서 MA 체계, 방법, 결과의 적용 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 이와 관련해 능력 배양이 시급히 요구됨을 강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부간 플랫폼’ 수립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 전문 국제 메커니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식한다.

- 본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국가 차원에서 랍사르협약 이행과 연계한 MA 반응 옵션을

활용하도록 당사국에 요청

- MA결과와 MA 반응 옵션에 대한 STRP 검토를 기초로 한 행동 이행을 위해 다른 MEA 사무국과 NFP와의 협력을 람사르사무국과 당사국들에 권장
- 협력 관계의 MEA 부속기구들이 STRP 검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요청
- STRP에게 결의문 VIII.34(농업 습지와 수자원 관리)의 맥락에서, 상호 연관된 국제수자원관리연구소(IWMD), 농업의 수자원관리 종합평가연구소, UNEP의 지구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al Outlook)에 대해 당사국들에게 추가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지시

**[COP10 DR19] 습지와 강 유역관리 통합과학기술지침** 대표단들은 11월 1일(토)에 동 사안(COP10 DR19)을 처음 검토했으며, 11월 4일(화)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논의는 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물협약과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의 언급;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 및 지불에 관한 WTO의 언급; 강유역의 맥락에서 '접경' 또는 '공유'의 용어 선택에 집중되었다.

UNECE 물협약에 대해, EU는 기타 관련 협정 및 UNECE 물협약에 과학지침을 배포할 것을 주장했다. 스위스는 사무국이 UNECE 물협약과 더욱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추가를 제안했으며, 브라질은 이에 반대했다. 터키와 브라질은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이 아직 미발효 상태이므로 동 협약에 관한 언급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독일은 이에 반대했다. 이라크는 동 협약이 논쟁 결론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수정 결의문에 대한 논의 중, 터키는 동 협약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 및 지불에 관해서, 아르헨티나는 용어들을 WTO 규정과 맞도록 수정을 요청한 데 반해, 스위스는 이 서비스들이 WTO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수정 결의문에 대한 논의 중, 코스타리카는 WTO에 대한 언급 삭제를 요청했고, 멕시코와 스위스가 이를 지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에 합의된 "협약과 기타 관련 국제 의무들에 따라"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으며, 파라과이가 이를 지지했고, 일본,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은 WTO에 대한 언급이 있는 한 결의문을 지지할 수 없음을 고집했다. 당사국들은 결의문 전체 내용에서 WTO의 언급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기타 유보 의견들은 회의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수정안에는 "공유 강유역"과 "접경 강유역"이 모두 세계 각지에서 널리 이용되며, 지하수와 지표수가 두 개 이상의 나라를 거치거나 사이로 지나는 강유역 언급이 혼용된다는 설명 주석이 담겨 있다. 터키는 동 사안에 대한 포괄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설명 주석이나 세계담위원회 보고서의 언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19, 수정안1)에서 COP는 당사국들이 통합지침을 국가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를 권장; STRP에게, 특히, 물과 습지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모든 채택 결의문의 권고문을 검토하고 통합 권고를 하도록 지시한다.

부속서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강유역 관리에 통합시키는

통합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COP10 DR20] 람사르습지에 대한 전략체계 적용에서의 생물지리구 분류 과학기술 지침** 동 결의문(COP10 DR20)은 11월 1일(토) 총회에서 논의되었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모든 관련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은 Malvinas/Falklands의 언급 문제를 얘기하며, 부속 테이블의 삭제를 요청했다. 결의문은 동 삭제 요청을 반영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최종 결의문(COP10 DR20 수정안1)은 STRP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사무국 및 Wetlands International과 함께, 람사르습지 정보서비스를 통해 세계의 생물지리구 분류체계의 전자버전 및 관련된 육상의 생물지리구 분류체계의 전자 버전 활용; 과학 연구기관 및 보전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육지 및 내륙의 생물지리구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추가 연구하고, 당사국들에게 적용 가능한 추가적 생물지리구 분류체계에 대한 자문; 습지의 대표성 평가 수단 개발, 접경한 람사르습지 과학 및 지정에 대한 지침 개발.

결의문은 또한, 생물지리구 분류체계 적용에 대한 보완 지침을 포함한 부속서의 지침들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COP10 DR2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H5N1)의 확산에 대한 대응 지침** 본 결의문은 2008년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서 처음 검토되고,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일본은 용어에 관한 제안, 관련 정보공개와 국가간 정보교류, 서식지에 있는 물새 감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EU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그러한 감시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US는 기존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더 나은 대응에 대한 내용 추가를 요청했다. 아프리카는 물새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지 않은 조류 독감도 반영한 용어를 요청했다. Wetland International은 야생조류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당연하게 간주해서는 안되며 습지에서 병원균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관리로 대응하도록 하는 문구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영국이 지지하였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당사국 및 기타 정부들은 조류전문가를 포함한 긴급대책위를 마련
- 물새류와 그 서식처, 기금류 및 기금류관련 생산품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통합 하여 의사결정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촉구
- 국제적 과학지침을 따르는 기금류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강조
- 당면한 위험과 대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의사소통프로그램 개발 지지
-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 과학 테스크 포스'의 지속적인 연구를 장려하며, 지난 조류독감 발병사태로부터의 교훈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
- STRP는 조류독감 대응사태가 습지와 그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지 살펴보고, 습지와 연관된 기축 및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질병 예방 및 조절에 대한



실제 지침 마련하도록 함

본 결의문의 부속서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5N1의 지속적 확산에 대한 탐사르 대응지침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OP10 DR22] 물새 이동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본 결의문은 2008년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서 처음 검토되고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사베리아 두루미와 다른 물새들을 위한 서부중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지침서를 제안하였고, 다른 일부 국가들은 동아시아 연안습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의 결과를 부속서에 첨부하도록 제안하였다. 아프리카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첨가와 환경관련 국가보고서에 물새에 대한 내용을 주요분야로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22 수정안1)은 당사국들에게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물새이동경로보전에 중요한 습지들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국들과 관련단체들에게 물새 개체군이 급감하는 주요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을 증진시키고, 이동경로 이니셔티브 조직간에 이동경로자원의 물새보전 정책 및 실천의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속서로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물새보호를 위한 국제회의’(04.4.3~8) 내용과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갯벌 국제심포지엄’(08.10.27)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COP10 DR23] 습지와 인간건강 및 복지:** 본 결의문은 11월 3일(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검토되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EU는 모든 관련된 질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목록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질은 제목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에콰도르가 제안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습지생태계의 자연적 인간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습지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원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간건강과 관련된 습지관리방안의 결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습지와 건강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STRP의 방침으로, 베네수엘라는 습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습지가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제안하였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당사국을 비롯한 습지관리의 의무가 있는 모든 단체에게 인간건강 및 복지와 습지보전이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요청
- 습지관리와 연관된 모든 기관들에게 습지와 인간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현 습지생태계의 기능을 유지·개선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퇴치를 위한 방법들이 습지 및 그 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요청
- 습지보전 관련된 정부기관, 시민단체, 사업부문간의 협력 증진 장려
- 당사국과 개발부문은 광업, 자원채취산업, 기반시설개발활동이 인간건강을 유지시키는 습지의 기능에 미치는 작·간접적인 영향을 피하도록 함
- 습지생태계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를 국가·국제 정책과 전략의

핵심요소에

- 과학적으로 증명된 습지의 자연기능이 인간건강 및 복지에 기여하는 바를 건강, 위생, 수질 관련부처에 제공하도록 함
- 당사국과 보건부문, 관련 모든부문들에게 협력을 통해 인간건강과 관련된 습지의 관리방안의 결과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
- 습지와 인간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질병위험의 증가를 인식하고, 습지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유지하고, 습지의 생태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 습지관련당국은 보건당국 및 다른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습지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 및 재발생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함
- STRP는 습지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하도록 함

**[COP10 DR24] 기후변화와 습지:**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 Max Finlayson이 토론을 주도하여 검토되었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채택되기까지 완화와 적응이란 단어 사용여부와 최근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미결정된 내용인 산림파괴로 인한 가스배출과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능력에 대한 언급문제에 대해 긴 토론이 이어졌다.

유럽연합(EU)은 연결성 및 이동경로 제공 등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으로서 습지의 역할,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를 다루는 특별 기술 전문 그룹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중국, 브라질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정책채택에 있어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개도국의 산림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완화정책에 대한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다. 습지의 기후변화완화 역할에 대해선 비공식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어느 대표단은 이러한 참조문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각각의 능력의 원칙 반영을 고려하여, 다른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용어와의 일관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여러 대표단들은 CBD와 UNFCCC 등과 같이 이미 다른 프로세스에서 합의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세스들과의 시너지를 강조하였다. 수정안에는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능력 언급에 대한 몇 가지 안과 토지이용변화와 개도국의 산림파괴에 의한 가스배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수정안에 대하여 브라질, 인도, 필리핀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적응(adaptation)’은 남기고, ‘완화(mitigation)’에 대한 언급은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반면 엘살바도르는 적응과 완화를 모두 남기는 방안을 주장하고, 쿠바가 이를 지지하였다. 호주 또한 결의문에 적응과 완화 두 개 모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합의된 결론은 1)생태계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생태계 기능의 일환으로 완화와 적응을 포함, 2)습지의 파괴를 막기 위한 당사국들의 활동의 일환으로 완화 및 적응 ‘활동’, 3) 통합적 국가정책 작성에 있어서는 IPCC와 새천년생태계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완화 및 적응을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습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극심한 기상이변에

-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습지를 관리하고,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국가들은 습지,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생태계의 물분배를 고려한 습지의 생태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와 메커니즘을 확보하도록 촉구
  - 이탄습지와 같이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난 습지를 잘 관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복원을 증진하고, 이러한 습지생태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도록 함
  - 사무국, STRP, 이탄습지를 위한 글로벌 액션 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UNFCCC와 UNCCD에서 이탄습지 및 기타습지들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고려하도록 함
  - UNFCCC의 결정 1/CP.13에 의거하여 행정당국은 UNFCCC focal point들에게 전문 지침 및 지원을 하도록 요청
  - 당사국들은 UNFCCC와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에 습지의 생태적 특성유지를 고려하도록 함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에게 습지, 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CBD와 람사르 공동업무계획(2002-2012)에 우선업무로 고려할 것을 요청함
  - 람사르사무국과 STRP는 습지생태계의 잠재적 기후변화완화·적응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CBD, UNCCD, UNEP, UNDP, FAO, 세계은행 그리고 특히 UNFCCC와 IPCC 등과 같은 관련국제협약 및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함
  - 또한 기후변화활동과 관련하여 UNFCCC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지의 법적지위 및 임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 중복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가 습지에 주는 위협 및 영향에 적용 가능한 람사르 핸드북을 기후변화 관련 국가 정책 및 관리 시 이용하도록 함
  - STRP 국가 focal point들에게 국가 및 지역적 이슈와 전문가를 국가 내 습지 과학자와 전문가 네트워크 안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함

**[COP10 DR25] 습지와 바이오연료:**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서 검토되었고, 11월 1~4일 열린 비공식그룹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대표단들은 바이오연료의 탄소저장능력의 균형 및 영향을 통한 긍정적 측면 언급여부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습지의 물을 빼내는 작업이나 이탄습지에 바이오연료 식물 경작 등 습지와 관련된 바이오연료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고된 회의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이 여러 습지 종류에 가져오는 이익과 비용, 그리고 영향에 대한 연구증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현존하는 정보수집과 배포에 대한 요구사항도 이끌어냈다.

본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농업, 바이오연료,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 언급,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토착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악영향 감소, 이탄습지의 물을 빼내는 바이오연료 경작감소, 한 차원 높은

보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토지이용 정책추진에 대한 내용이 초기에 거론되었다.

호주는 무역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탄습지대의 팜오일 생산지로의 전용에 대한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식량과 바이오연료 관련 논쟁을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식량과 연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증가가 습지 전용 및 다른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압력 야기에 관한 내용 삽입을 요청하였다. Wetland International은 습지 보전에 대한 사전경고적 접근을 피력하였다. 이 이슈에 대한 의논을 지속하기 위한 비공식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비공식 작업반에서는 결의문을 한 문장씩 검토해가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회의에서 다시 본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을 때에 악영향 언급 문제(브라질은 ‘간접적 악영향’이란 문구 삭제요청), 습지복원을 통한 배수와 상쇄방안(offset measures)에 대한 문제, 사회경제적 영향(호주는 관련 문구 삭제요청)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본 결의문의 초점을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맞추자는 내용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용어 일치 문제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DR25 수정안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결의문 IX/2 (농업과 생물다양성: 바이오연료와 생물다양성)을 인정
-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이용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바임
-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으로 시급한 이슈임을 인식
- 바이오연료가 생물다양성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특히 원재료, 생산방식 및 장소, 농업방식, 현지 정책에 의해 결정됨
- 식량과 연료생산에 대한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로 인한 식량 및 연료생산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요구가 습지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증가하고 바이오연료 경작지로 전환된 습지는 습지생태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됨
-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당사국들은 바이오연료 경작이 람사르습지를 포함한 다른 습지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이득, 배수를 포함한 위험을 평가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악영향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고 상쇄효과를 발생시키는 습지복원과 같은 활동하도록 함
-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뒷받침하는 적합한 토지이용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당사국들은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책에서 습지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와 그 주변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전체적인 고려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손실비용을 추정하도록 함

- STRP는 습지에 영향을 끼치는 바이오연료 생산의 세계분포를 조사하고, 습지와 연관된 바이오연료 생산과 관련된 모범적인 관리방안 지침서,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를 검토,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바이오연료 관련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침서 및 평가기준 마련하도록 함

**[COP10 DR26] 습지와 자원채취산업**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에 처음 논의되고, 비공식적 회의 진행 후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COP10 DR16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습지생태계기능평가와 WTO규율 간의 일원화를 요구하였지만 다른 나라들의 반대가 잇따랐다. 아프리카는 자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을 구분하고 국가적 습지 목록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민간사업부문이 사회적 책임 관련 프로젝트 설립 및 강화와 자원채취산업이 생물 다양성 및 지역민과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시키는 것이 언급된 부분에 국가적 입법체계와의 조화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자연자원채취산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공평하게 할당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를 지지하였다.

**최종결의문:** COP10 DR26 수정안2에서는 습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연자원채취산업 관련 지역회의를 지원해 준 Gabon에 감사를 표명하고 있다.

- 자원채취산업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을 파악하고, 그것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함
- 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협약과 국제적으로 동의된 발전목표 및 다른 국제적 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생태계기능에 대한 전 영역을 평가하도록 함
- 생태계접근(CBD접근법 포함)을 통해 강유역 상류, 하류의 영향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도록 함
- 습지 및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및 허가절차 검토 및 수정하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은 국가 입법 상황 하에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함
- 매우 중요하거나 비가역적인 습지생태계 기능의 손실이 예측될 경우,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영향은 국가 입법 상황 하에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함
- 접근방식 및 행동지침에 있어서 자원채취산업이 원래의 이탄습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법과 행동하도록 함
- 자원채취산업 사업 실행 과정에서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기능의 손실을 피하도록 함
- 생물다양성, 지역주민과 공동체와 연관된 습지에 대한 자원채취산업의 영향을 피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연자원채취산업이 끝난 후 새로운 습지를 조성하거나 현존하는 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
- CBD, UNCCD, UNFCCC관련 프로젝트 및 지시와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함

**[COP10 DR27] 습지와 도시화:** 11월 1일(토)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되었다. 태국은 역량 강화와 자원동원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다. 베네수엘라는 CEPA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참여 증진을 위한 도구로 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COP10 DR27 수정안1)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안하고 있다.

- 도시 및 그 주변지역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역량강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 부적절한 도시팽창을 막는 역할을 하는 도시주변 람사르습지의 가치를 강조하고
- 당사국들에게 도시 및 그 주변지역 습지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며,
- 당사국들에게 도시 및 그 주변지역 습지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구 및 복원을 추진하도록 함
- 도시습지, 도시근처, 도시 팽창에 위협을 받는 외곽의 습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하도록 촉구함
- 도시 및 주변습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CEPA의 역할 지지
- UN-HABITAT과 협력하여 습지와 물의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도시 생성에 힘쓰도록 촉구함
- STRP 국가 focal point들이 도시습지와 관련하여 STRP에 과학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바람
- STRP는 도시 및 그 주변지역 습지에 대한 지침서 마련에 대한 사항 고려하도록 함

**[COP10 DR28] 습지와 빈곤퇴치:** 본 결의문은 원래 습지와 빈곤감소로 11월 1일(토) 본회의에서 소개되었고, 습지와 빈곤퇴치로 11월 3일(월)에 채택되었다. 브라질은 새천년개발목표(MDG)와의 일치를 위해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을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로 변경을 제안했다. 또한 아프리카는 생태계 서비스 이용비용지불에 대한 사항 추가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긴급 계획 마련이 협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언급했다. 본 결의문은 토요일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의 최종안(COP10 DR28 수정안1)에서는 IX.14에서 채택된 비와 같이 습지와 빈곤퇴치 프레임워크 이행을 촉구하고, 습지와 빈곤퇴치 관련 행동의 성공, 난제, 한계, 기회를 보고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의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이 빈곤감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관리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정책에 연계시키도록 함
- 전통적인 지식과 생활방식이 국가 습지관리와 지속가능한 생활 이니셔티브와 연계되도록 함
- 조기경보시스템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 복원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염분침투에 대응하도록 함



- 생태계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불의 도입(산림과 습지 파괴 방지 포함)과 민간사업부문과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통한 활동을 장려하여 그 수익을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장려함
-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재화로 인식하여 사용시 세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습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이 외에도 결의문에서는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과 빈곤퇴치의 연계 프레임워크 개발,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과 빈곤퇴치 관련 지표 개발, 습지관리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습지생태계 기능의 유지 및 복원이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비에 대한 조사검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COP10 DR29] 국가차원의 협약 이행기관 및 유관기관 기능 명확화**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 본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는 사무국과 국가차원의 단체들 간 상호적 책임에 대한 내용추가를 요청했다. 아프리카는 국가 Focal Points이 사용 가능한 도구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제공 필요성 강조하였다. WWF는 IOP를 대표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관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의 최종안(COP10 DR29 수정안1)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부속서에서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이행 분야를 수행하도록 당사국에 요청
- 지방 혹은 주와 같은 지자체에 의해 협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당사국들에게 이행을 위한 지자체 기구를 설립·강화하도록 촉구함
- 국가람사르위원회에 CEPA와 STRP NFPs의 참여를 권장
- 사무국이 NFPs를 위한 방안 개발을 장려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부를 환원하는 바임(특히 선진국들)

본 결의문 부속서에는 국가차원의 협약이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다.

**[COP10 DR30]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람사르협약** 바하마가 카리브해 국가들을 대표하여 제출한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에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되었다. 모리셔스는 생태관광개발이 연안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고, 그밖에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결의문은 채택되었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에서는 군소도서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그에 따른 습지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SGF를 통해 군소도서국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소도서국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다. 군소도서당사국과 그 지역의 개발 지지-옹호자들에게 본 협약이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발 시 환경의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것을 요청하고 있다.

**[COP10 DR31]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증진:**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본 결의문은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본 결의문이 무역과

관련된 다른 협약들과 일치하지 않는 농업정책을 지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브라질, 호주, 파라과이는 반대의를 밝혔다. 유럽연합(EU)과 IWM는 부적절한 논 지대 확장 및 개발이 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다. 태국은 최근 식량에 대한 전지구적 수요증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TRP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현명한 사용과 관련하여,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농약과 살충제 사용 감소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호주는 이러한 내용 도입에 대해 경고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공식회의가 일본을 의장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목표에 부합하는 논의 생태적·문화적 역할이라는 문구에서 ‘국제적으로 동의된 목표에 부합’이라는 용어사용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하였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의 목적은 논의 생태적·문화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람사르협약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서문에서 재차 단언하고 있다.

- 당사국에 눈에 서식하는 동식물상과 논의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시켜 온 농경문화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논농업을 찾아내고, 습지보전 목표를 강화하고, 논의 생태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람사르습지 및 FAO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 등의 등록을 통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및 보전강화
- 지속가능한 논농업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농민, 보전기관들 사이에 정보교환 및 배포를 권장함

본 결의문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습지생태계로서의 논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도전과제 및 기회를 규명하고, 계획 및 농업, 수자원관리가 이행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COP10 DR32] 창원선언문:** 본 결의문은 한국이 11월 1일(토)에 본회의에서 발표하였고, 11월 4일(화)에 채택되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생산 원료로서의 물에 대한 내용삭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아프리카는 이 선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준을 넘어서 정책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길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초안 내용에서 “채택(adopt)”을 “환영(welcome)”이나 “고려(take note)”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사무국은 다른 결의문에서 논의된 용어와 일치 시킬 것임을 밝혔다.

**최종결의문:** 본 결의문의 최종안(COP10 DR32 수정안2)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부속서에 첨부된 ‘인류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선언문’을 환영
- 당사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창원선언문을 주, 의회, 민간부분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책임기관에게 창원선언문 이행을 장려함
- 창원선언문을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지방/국가/국제적 차원에서 람사르협약을 비롯한 지원 및 협력 가능한 기구들(유엔지속발전위원회, 유엔기구, 다자간국제환경협약, 국제물포럼 등)을 통해 창원선언문의 이행에 널리 힘쓰도록 함
- 상임위, STRP, 사무국, CEPA NFPs, 지역이니셔티브, IOPs 등에게 창원선언문 이행을 향후 활동 시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도록 촉구함

- 상임위와 사무국은 COP11 국가 보고서에 창원선언문 배포와 파급효과 측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 상임위, STRP, CEPA NFP, 지역 이니셔티브, IOP는 COP11에 창원선언문 배포와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사무국에 조언할 것

본 결의문의 부속서에서 창원선언문의 유래와 효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COP10 DR33] 총회 개최국 한국에 감사 표명:** 본 결의문은 11월 4일(토)에 소개되고 채택되었다. 본 결의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습지보전에 대한 지원과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총회 준비에 힘써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을 환대해준 경남도와 창원시장, 시민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랍사르협약 및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지원을 칭찬하고, 동아시아랍사르지역센터 건립계획도 환영하고 있다.

### COP10 폐회

폐회 총회는 11월 4일(화) 5:50pm에 열렸다. 대표단들은 향후 3년간 상임위원회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당사국들을 선출했다.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메룬, 탄자니아, 모리셔스, 튀니지
- 아시아: 중국, 레바논, 태국
- 유럽: 체코, 핀란드, 그루지아
- 신열대구: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 북미: 멕시코
- 오세아니아: 마셜군도

튀니지는 앙골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와 잠바브웨가 협약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임시적으로 선출되었다. 상임위의장직은 COP10 의장직을 맡은 대한민국이 맡고 부의장으로는 파라과이가 선출되었다.

영국은 자원채취산업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자원채취산업 분야에 모범 관행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유라시아 물새협약과 랍사르협약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25,000 CHF(스위스프랑)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협약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STRP 프로젝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5,000 CHF(스위스프랑)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헝가리는 SGF에 10,000스위스프랑을 기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루마니아는 2012년 상반기에 COP11을 유치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 제안은 박수갈채와 함께 승인되었다. 우루과이는 역대 당사국총회가 남아메리카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음을 밝히며 COP12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했다.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COP10을 유치한 대한민국과 창원시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국제기구파트너(IOP)를 대표하여 발언한 Wetlands International은 대한민국이 철새의 이동경로인 갯벌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서해에서 진행 중인 매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에는 물, 인간 건강과 빈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Wetlands International은 합의 도출을 위해 몇몇 결의문들이 약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결의문은 통합적 cross-sectoral 접근방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습지가 UNFCCC 논의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모로코는 아랍어 사용 국가들을 대표하여 COP11의 공식 언어로 아랍어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랍사르 NGO 네트워크는 비록 지원과 자원은 없지만 소규모의 NGO들의 역할, 특히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랍사르총회에서 소규모 NGO들의 과소대표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습지연합은 세계습지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매 COP 개최 전 활성화 및 협조, 국제적 기반의 마련, 기술적 정보 교류 원활화, 그리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작업반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임을 밝혔다. 이런 활동이 소통의 도구가 될 것임을 언급하고, 본 네트워크를 통해 NGO들이 COP과 일반적인 습지 이슈와 관련해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ada Tiéga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랍사르협약에 봉사해 온 캐나다의 Clayton Rubec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인사’로 지명하고 상장을 수여하였다. 대표단들은 그 후 편집상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회의보고서를 채택하였다.

COP10 의장인 이만의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32개 결의문들이 채택되었음을 밝혔다. 이만의 장관은 참가자들에게 채택된 결의문들을 작성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음을 상기시키며, 전략계획 2009-2012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만의 COP10 의장은 참가자들에게 본 총회가 성공적인 총회로 자리매김 된 것을 축하했고, 대한민국은 향후 3년 동안 추가 기금 조성을 포함, 랍사르협약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밝혔으며, 모든 당사국들과 IOPs에게 창원 선언문 이행을 요청했다. 이만의 의장은 7:06pm에 폐회를 선언하였다.

### 제10차 당사국총회 평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는 습지와 인간의 생계 및 복지 간의 필수불가결한 연결고리를 논의의 석상에 올려 놓았다.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은 37년 전에 채택된 이래로 그 범위와 규모 측면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겪었다. 주로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이행 범위를 보다 넓혀 습지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협약이 되어, 인간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와 빈곤감소와 같이 범지구적 이슈의 중심에 있으며 최근 CBD, UNFCCC와 같은 관련 협약에서 최근 논란의 대상인 사안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협약의 초점과 범위의 확대는 랍사르협약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여타 다자간환경협약 및 회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협약의 당사국은 146개국에서 15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랍사르습지도 1,524개에서 1,812개로 증가하였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제10차 당사국총회는 165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환경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모인 최대 규모의 총회였다.

람사르협약이 다루는 범위와 규모확대에 따른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 란사르협약이 제도적 틀을 넘어섭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약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핵심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평가 요약은 COP10의 도전과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도적 개혁과 기후변화, 바이오연료, 식량안보와 인간 복지와 같은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더 크게 더 멀리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개회 축하 영상에서, 생태계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란사르협약의 역할이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란사르협약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습지와 관련된 현재의 국제적 동의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상임위원회 및 STRP의 지침이 요구될 것이며, 란사르 행정당국은 지방,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어진 인력과 재원으로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사무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COP10 기간 동안 Anada Tiéga 사무총장은 세계의 습지들이 미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저 없이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협약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것과 여타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이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영역까지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COP10에서 채택된 세 번째 전략계획(2009-2014)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 란사르습지 목록 개발, 국제협력, 이행역량과 협약가입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일반 목표들은 지난 3년에 비해 이제 26가지 우선전략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현재의 사무국 구성이 증가하는 란사르습지를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란사르협약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COP10의 처음 며칠 동안은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팽배했다. 이 논의에서는 현재 스위스 정부와 IUCN의 관리 하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되거나 UN기구/기관(특히 UNEP)의 산하기구로 들어가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향후 몇 달간 당사국들은 COP10에서 설립한 특별 작업반을 통해 각 방안의 법적, 재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란사르협약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연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시된 법적, 행정적 개혁에서는 IOP와의 독특한 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IOP는 협약의 모든 업무에서 파트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를 변경함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역시 많은 당사국들, 특히 자국의 분담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일본, 미국, EU와 같은 주요 기여국들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도국들은 UN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선호했다.

여타 다자간환경협약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재정 수준을 보이는 란사르협약에 대해, 여러 대표단들은 만일 자발적인 공여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협약의 지역 사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고민했다. 자국의 연 분담금을 100% 인상하여 아프리카 지역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아프리카 당사국들의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이더라도 란사르협약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서 환영받았다.

재정적 제약하에서, 란사르협약은 추가적인 기금을 끌어 오기 위해 협력증진담당 직책의 개설 등 창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당사국들은 SGF의 재구성을 통해 란사르협약 홈페이지에서 Small Projects Portfolio하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잠재적 기여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습지와 기후변화 완화 불편한 진실?

COP10의 마지막 이틀간은 바공식 그룹들 간 습지와 기후변화 그리고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어렵고 긴 협상의 시간이었다.

COP10의 기후변화 결의문은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몇몇 당사국들은 이 결의문에 반대했으며, 이에 대표단들은 란사르협약, UNFCCC 그리고 CBD 간의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몇 당사국들은 개도국들의 산림전용에 의한 배출량 감축 정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제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사항은 UNFCCC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UNFCCC에서의 결정을 예단하는 것이라고 그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도국들은 그 어떠한 협상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훼손할 수 없도록 연대를 유지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가들은 적응과 완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대표단은 국제적 수준에서 란사르협약을 더욱 부각시키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창원에서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애도했으며, 습지를 UNFCCC 논의의 중심으로 확립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 완화 및 적응에 있어서 습지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COP10은 완화에 있어서 습지의 역할과 그 불편한 진실에 관한 끝없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몇몇 당사국들은 이탄층의 기후변화 완화능력을 반박하며 IPCC 제4차 보고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 대표단은 “이탄층에 분별없는 기후 완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의문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과 이탄층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맥락에서 란사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식증진활동(CEPA)을 보여줄 것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개국에서 4억 헥타르를 덮고 있는 이탄층과 수자원관리와의 연관성은 부정되지 않았다. 이탄층,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지의 보전과 복원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차체에 주요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러한 생태계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수, 화재 및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의 채취 등을 통한 이탄층의 훼손은 점차 더 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요인이 되고 있으며 범지구적 화석연료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습지와 바이오연료 논의를 통해 바이오연료 작물이 물 부족을 심화시키고 습지와 생물다양성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임을 인정했다. 습지와 바이오연료 논의에서는 당사국들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다른 논의에서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당사국들은 바이오연료의 긍정적 영향, 탄소 균형과 탄소저장용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의 평가 항목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습지를 경솔하게 개발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더 큰 환경적, 재정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많은 당사국들이 인정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진일보이다. 습지에만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다 보니 COP에서 바이오연료의 영향 및 식량 안보, 인간 건강과 빈곤의 현명한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결의문도 채택할 수 있었다. 이는 CBD와 같은 회의에서 채택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논쟁의 소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면서 다른 절차에서와 같이 삭제되지 않을 여지가 줄어들었고, 정치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 루마니아를 향하여

람사르협약의 당사국 수와 람사르습지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국의 역량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향후 3년간 람사르협약과 당사국들은 효과적인 이행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 인식제고, 역량강화 및 다른 다자간환경협약과의 협조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 부문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람사르 원칙들을 통해 상호간 더욱 유익한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중-에비앙 그룹과의 파트너십은 지난 10년간 람사르협약의 원조활동과 스타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공약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루마니아에서의 총회를 앞두고 람사르협약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국내적으로 람사르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오직 4개의 당사국들만이 CEPA 행동계획을 개발한 것에 비해 당사국들의 80%가 정부 내 CEPA Focal Point를 지정했다. 또한 새로 채택된 CEPA 프로그램은 습지 관리에 대한 정보와 모범 관행의 교류, 람사르협약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국가적 우선순위 확립을 통해 지역적인 협동 사업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습지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공동사업은 람사르협약과 UNFCCC, IPCC,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들, UNDP, FAO와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협약 및 기관과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루마니아에서 COP11이 개최되기 이전에 열리는 2008 포즈난 기후변화회의, 2009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상당히 감축하기 위한 2010 목표가 재검토될 2010 일본 CBD COP10과 같은 여타 국제회의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회의들에서의 논의가 람사르협약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관련 회의 소식

**제2차 테헤란협약 당사국총회** 2008.11.10~12, 테헤란(이란). 연락처: Caspian Sea Environment; tel: +9821-22059574; 9821-22042285; fax: +9821 22051850; e-mail: cep.pcu@undp.org; internet: <http://www.caspianenvironment.org/Newsite/Calendar.htm>

**2008 제2차 물과 식량 국제포럼** 2008.11.10~14, 아디스 아비바(에티오피아). 연락처: Challenge Program on Water and Food 사무국; tel: +94-11-278-4083, 288-0000(일본); e-mail: cpwfsecretariat@cgiar.org; internet: <http://www.ifwf2.org/>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제1차 CBD AHTEG(특별 기술전문가 그룹) 회의** 2008.11.17~21, 런던(영국). CBD 사무국 주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간 연관성에 대한 과학, 기술적 사항, 리스크와 취약성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완화의 영향과 기회요인에 대해 논의. 연락처: CBD 사무국; tel: +1-514-288-2220; fax: +1-514-288-6588; e-mail: secretariat@cbd.int; internet: <http://www.cbd.int/doc/?meeting=AHTEG-BDCC-01>

**물-에너지 관계 국제 심포지엄** 2008.11.26~28, 파리(프랑스). UNESCO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NESCO 재생에너지 프로그램과의 협동 하에 비영리단체 RED-Ethique가 개최. 제5차 세계 물 포럼(2009.3 개최)의 준비 이벤트 성격도 가짐. 연락처: 심포지엄 사무국; tel: +33(0)1-42-19-14-77; fax: +33(0)1-42-19-13-34; e-mail: valerie-anne.kodjovi@developpement-durable.gouv.fr; internet: <http://www.ancold.org.au/images/Pre%20registration%20paris%20november%202008.pdf>

**GEO TUNIS 2008: 지리정보시스템, 과학, 우주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와 자연자원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08.11.26~28, 튀니스(튀니지). 수자원지속가능성, 특히 빗물과 지류의 수집, 저장 및 관리; 댐 건설 지역의 최적화; 수문학 모델링 및 공간기술 과정; 건조한 환경에서의 수자원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연락처: Mohamed Ayari; tel: +216-71-341-814; fax: +216-71-341-814; e-mail: atigeo\_num@yahoo.fr; internet: [http://www.geotunis.org/version\\_ang/index.php](http://www.geotunis.org/version_ang/index.php)

**CMS COP9** 2008.12.1~5, 로마(이탈리아). CMS 사무국과 이탈리아 정부 주최. COP9 개최 전 CMS 과학위원회 제15차 회의(11.27~28), UNEP/GEF 시베리아 두루미 습지프로젝트 준비위원회 회의(11.28~30), 고릴라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11.29), 건조 지역 육지 포유동물 회의(11.30), 그리고 CMS 상임위원회 제34차 회의(11.30) 개최. 월경성 상어에 대한 국제협력 제2차 회의는 COP 직후 개최 예정(2008.12.6~8). 연락처: CMS 사무국; tel: +49-228-815-2426; fax: +49-228-815-2449; e-mail: secretariat@cms.int; internet: [http://www.cms.int/bodies/COP/cop9/cop9\\_meeting\\_docs.htm](http://www.cms.int/bodies/COP/cop9/cop9_meeting_docs.htm)

**UNFCCC COP14, COP/MOP4** 2008.12.1~12, 포즈난(폴란드). UNFCCC의 보조기관인 SBSTA, SBI의 제29차 회의 및 AWG-LCA 제4차 회의, AWG-KP 제6차 속개회의도 동시에 개최. 연락처: UNFCCC 사무국; tel: +49-228-815-1000; fax: +49-228-815-1999; e-mail: secretariat@unfccc.int; internet: <http://unfccc.int>

**아프리카 농경 및 에너지를 위한 물에 관한 FAO 고위급회담**  
**기후변화에 따른 과제** 2008.12.15~17, 시르트(리비아). 아프리카의 농경과 에너지 부문을 위한 물 수요 증가의 상황과 기후변화 조건 하 수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논의. 농경과 에너지를 위한 물의 현황과 수요, 잠재력, 비용 및 자금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국 정부 대표들에 수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려 함. 연락처: FAO Water; tel: +39-06-57051; fax: +39-06-570-53152; e-mail: SirteWater-Secretariat@fao.org; internet: http://www.sirtewaterandenergy.org/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과학회의**: 범지구적 위협, 도전과 결장: 2009.3.10~12, 코펜하겐(덴마크). “해양유역과 해양자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 포함. International Alliance of Research Universities의 협력 하에 코펜하겐 대학이 주최. 2009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준비회의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완화와 대응 전략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종합을 제시. 연락처: Torben Mandrup Timmermann; tel: +45-35324106; e-mail: tmti@adm.ku.dk; internet: http://climatecongress.ku.dk/

**제5차 세계 물 포럼** 2009.3.15~22, 이스탄불(터키). 개최당국의 협조 하에 세계물위원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 관련 최대의 세계적 이벤트 “물 격차 매우가”(Bridging Divides for Water)를 주제로 제5차 포럼 개최. 연락처: 세계물위원회 사무국; tel: +33-4-91-99-41-00; fax: +33-4-91-99-41-01; e-mail: m.giard@worldwatercouncil.org; internet: http://www.worldwatercouncil.org/index.php?id=6

**UNFCCC COP15, COP/MOP5**: 2009.11.30~12.11, 코펜하겐(덴마크). UNFCCC의 보조기관인 SBSTA, SBI의 제31차 회의도 동시에 개최. UNFCCC 발리 회의(2007.12)에서 합의한 “로드맵”에 따라 COP15과 COP/MOP5에서 post-2012(교토의정서의 제1기 공약기간이 끝나는 해) 기후변화 대응 골격에 대한 협의를 종결시킬 것이 기대. 연락처: UNFCCC 사무국;

tel: +49-228-815-1000; fax: +49-228-815-1999; e-mail: secretariat@unfccc.int; internet: http://unfccc.int/

**CBD COP10**: 2010.10.18~29, 나고야(일본).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2010 목표 달성 평가, ABS에 관한 국제레짐 채택 및 생물다양성의 해 2010을 축하하는 회의. 연락처: CBD 사무국; tel: +1-514-288-2220; fax: +1-514-288-6588; e-mail: secretariat@cbd.int; internet: http://www.cbd.int/meetings/

**Ramsar COP11**: 2012 상반기, 루마니아. 연락처: Ramsar 사무국; tel: +41-22-999-0170; fax: +41-22-999-0169; e-mail: ramsar@ramsar.org; internet: http://www.ramsar.org

**용어(glossary)**

CBD	생물다양성협약
CEPA	의사소통·교육·참여·인식증진 활동
GEF	지구환경기금
IOP	국제파트너기구
IPCC	기후변화관련 정부간 협의체
MA	새천년생태계평가
MEA	다자간환경협약
NFP	국가 포괄 포인트
RIS	람사르습지 정보양식
SGF	소규모 지원기금
STRP	과학기술검토패널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This issue of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 <enb@iisd.org> is written and edited by Imran Habib Ahmad, Asheline Appleton, Ph.D., Stefan Jungcort, Ph.D., Leila Mead, and Renata Rubian. The Digital Editor is Dan Birchall. The Editor is Pamela S. Chasek, Ph.D. <pam@iisd.org> and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is Langston James “Kimo” Goree VI <kimo@iisd.org>. The Sustaining Donors of the *Bulletin* are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CIDA), the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uropean Commission (DG-ENV), and the Italia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General Support for the *Bulletin* during 2008 is provid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wed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WAN International, Swiss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the Fin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he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 IGES),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rough the Global Industrial and Social Progress Research Institute - GISPRI)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unding for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Fren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rancophonie (IOF). Funding for the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Spanish has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pai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Bullet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IISD or other donors. Excerpts from the *Bulletin* may be used in non-commercial publications with appropriate academic citation. For information on the *Bulletin*, including requests to provide reporting services, contact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at <kimo@iisd.org>, +1-646-536-7556 or 300 East 56th St., 11A, New York, NY 10022, USA.